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축산식품부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관련 동식물 검역조치 규범 이행 및 농촌 생활환경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동식물 검역 및 현장농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6급 4명, 7급 8명, 8급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관장하던 비료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와 관세청에서 관장하던 수입 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무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사무를 수행하던 관세청 소속 인력 2명(7급 1명, 8급 1명), 농촌진흥청 소속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비료의 생산 및 유통단계 품질검사에 관한 사항

9.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619”를 “621”로 하고, 일반직 계 “615”를 “61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6”을 “598”로 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2,671”을 각각 “2,689”로 하고, 3급 또는 4급 이하 “2,625”를 “2,64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①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령 제000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관세청 소속 공무원 2명(7급 1명, 8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관세청으로부터 이체받는다.

②농림축산식품부는 대통령령 제000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을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체받는다.

제3조 (농림축산식품부 정원에 관한 특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2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 29일까지는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2의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

(대통령령 제00000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 관련)

총계	620
정무직 계	2
장관	1
차관	1
별정직 계	2
고위공무원단	1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1
일반직 계	616
고위공무원단	1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1
3급 또는 4급 이하	597
전문경력관	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직무)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이하 이 장에서 “농관원”이 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 다. 1. ~ 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제25조(직무) ----- ----- ----- --. 1. ~ 7. (현행과 같음) <u>8. 비료의 생산 및 유통단계 품</u> <u>질검사에 관한 사항</u> <u>9. 수입농산물 등의 유통이력</u> <u>관리에 관한 사항</u>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2]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619</u>	<u>621</u>	+2
·	·	·	
·	·	·	
일반직 계	<u>615</u>	<u>617</u>	+2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596</u>	<u>598</u>	+2
·	·	·	

[별표 3]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9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2,671</u>	<u>2,689</u>	+18
일반직 계	<u>2,671</u>	<u>2,689</u>	+18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2,625</u>	<u>2,643</u>	+18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6